

#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송정빈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10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3월 28일

발 의 자 : 송정빈, 김제리, 김광수, 김정환  
최정순, 김생환, 송명화, 김경영  
이광성, 김태수, 이동현, 최기찬  
문장길, 이정인, 정진술, 한기영  
오현정, 권순선 의원 (18명)

## 1. 제안 이유

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 수도권 3개 시·도 의견수렴 결과 환경부가 과태료 부과 기준을 1회/1일에서 1회/1개월로 변경('18.4.4)하도록 함에 따라 기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며, 과태료 부과·징수 등의 절차를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을 따르도록 하는 것임.

## 2. 주요 골자

- 가.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현행 1회/1일에서 1회/1개월로 함(안 제5조제3항)
- 나. 과태료 부과·징수 등의 절차를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을 따르도록 함(안

제5조제4항 신설)

다.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을 변경함(안 별지 제1호서식)

### 3. 참고 사항

가. 관련 법령 : 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

나. 예산 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1일”을 “1개월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 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

별지 제1호서식 중 “대기정책과”를 “차량공해저감과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)</p> <p>① ~ ②(생략)</p> <p>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<u>1일</u> 위반횟수가 1회를 초과하더라도 한 차례만 부과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50px;">〈신설〉</p>	<p>제5조(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1개월</u> ----- -----.</p> <p>④ <u>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 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</u></p>

## 현 행

[별지 제1호서식]

일련번호 : 운행제한 위반 통지서			
소유자	성 명 (상호)		생년월일 (사업자등록번호)
	주 소		
위반내용	차량번호		최초등록일
	차 명		차대번호
	총중량(kg)		배기량(cc)
	운행장소		운행일시
	단속방법	무인단속시스템, 단속공무원 단속	

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 28조의 2 및 「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에서 운행하다가 단속되었기 「운행제한 위반 통지서」를 발부합니다.

- ※ 처음 1회 위반시에는 저공해조치 기간 등을 고려하여 30일 동안 행정지도하나 그 이후 위반시에는 매 위반시마다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.
- ※ 이 통지에 이의가 있으시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년 월 일까지 서울특별시 **대기정책과**로 제출(또는 FAX 02-2133-1025)바랍니다.

☎ 문의전화 : 서울특별시 **대기정책과**  
(02-2133-3659)

년 월 일

서울특별시 장

※ 첨부 : 위반사실 근거자료

## 개정안

[별지 제1호서식]

일련번호 : 운행제한 위반 통지서			
소유자	성 명 (상호)		생년월일 (사업자등록번호)
	주 소		
위반내용	차량번호		최초등록일
	차 명		차대번호
	총중량(kg)		배기량(cc)
	운행장소		운행일시
	단속방법	무인단속시스템, 단속공무원 단속	

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 28조의 2 및 「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에서 운행하다가 단속되었기 「운행제한 위반 통지서」를 발부합니다.

- ※ 처음 1회 위반시에는 저공해조치 기간 등을 고려하여 30일 동안 행정지도하나 그 이후 위반시에는 매 위반시마다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.
- ※ 이 통지에 이의가 있으시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년 월 일까지 서울특별시 **차량공해저감과**로 제출(또는 FAX 02-2133-1025)바랍니다.

☎ 문의전화 : 서울특별시 **차량공해저감과**  
(02-2133-3659)

년 월 일

서울특별시 장

※ 첨부 : 위반사실 근거자료